제 15 장　학술연구위원회

제40조 (설치와 구성) 의과대학은 교원의 학술연구에 관한 제반 사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술연구위원회를 둔다.

1. 위원장은 연구 및 기금부학장으로 한다.
2. 선출직 위원은 의과대학 교원 중에서 의과대학장의 추천으로 의과대학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41조 (기능) 학술연구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원의 교내 연구비 과제 선정
2. 학술연구의 진행과 결과의 분석 및 개선에 관한 사항
3. 학술연구에 대한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기타 교원의 연구에 관한 사항